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9.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4. 검 토 의 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7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예 순**

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별지 및 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등이 각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등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법률제명 띄어쓰기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